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9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 어기구 · 박해철 · 황정아

허종식・황 희・박 정

이개호 · 오세희 · 허 영

이병진 · 허성무 · 김성원

이만희 • 박지워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현행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농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농민과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 기간에 따른 제약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함으로써,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제5호·제6호).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각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u>제</u>	3 <u>-</u>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	<u>지</u>		
<u>의 농지</u> 를 소유하는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대차) ①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			
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조제1항에 따라 <u>개인이</u>	5 <u>개인이</u>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			
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의2. (생략)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 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 9. (생략)

② (생 략)

5의2. (현행과 같음)
6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